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누62141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redacted]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피고, 피항소인 2. [redacted]군수

3.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4.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피고1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

피고3보조참가인 [redacted]광역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4구합6905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2.

판 결 선 고 2018. 1.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특별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시장의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위 보조참가인이,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 [redacted]광역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 1 기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11,507,068,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2 기재 취득세에 대하여 피고 [redacted]군수가 2012. 10. 26., 피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2012. 10. 17., 피고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이 2012. 10. 31. 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나.항과 같은 판결.

나.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제1심판결 중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 [redacted]구청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2. 8. 피고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피고 [redacted]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는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은 위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제1호),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도 제105조 제1항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장소이고, 더구나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지에 따라 과세권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과 같이 이동성이 높은 과세물건은 과세관청이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납세지를 정할 때 차량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과세실무는 지방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제도에 착안하여 해당 차량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그 취득세를 과세하여 왔다. 또한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제8조 제1항에서 과세물건별로 취득세 납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는 과세실무를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제2호)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의 의미를 해석할 때도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당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단서에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자동차등록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2010. 6. 1.부터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등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자, 납세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단서 부분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③ 한편 이 사건 조항에서 그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거지'의 의미에 대하여,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제1호)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제2호)로 각각 규정하여 이 또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항은 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을 뿐이고, 등록관청은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사용본거지로 신청한 장소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지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서도 사용본거지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등으로 사실상 추단하고 있고, 법인의 지점 등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지점 등이 갖추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④ 더구나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로 차량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수 없다. 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나 법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원칙적인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 역시 실제로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러할 개연성이 높은 곳에 불과하다.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사용본거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의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도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등록관청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사정도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취득세 납세지를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과다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피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실제로 차량을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지를 어느 시점 내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나 법인의 원칙적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는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지 않은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를 이와 달리 취급할 근거도 없다.

나. 인정 사실

① 원고는 2008. 3. 3. [redacted]읍 [redacted]리 [redacted]에, 2008. 5. 20. [redacted]구 [redacted]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redacted]에, 2010. 12. 17.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에 각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등록을 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위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사용본거지에 위 지점 주소가 기재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등록차량에 대하여 위 지점 소재지인 [redacted]군, [redacted]구, [redacted]구를 납세지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④ 위 지점에서 원고가 각 리스차량의 소유자 또는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하게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⑤ 그 후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하여 말소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4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취득세 납부 및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광역시 [redacted]등록사업소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이 각 지점을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수리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취득세 납세지로서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위 각 지점이고, 위 피고들이 각 지점을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redacted]군, [redacted]구, [redacted]동구에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0

고 [redacted]군수,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군수,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redacted]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redacted]구청장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한편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견종철

판사 장철익